

담임지도교수제에 관한 규정

- 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담임지도교수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정의)** 담임지도교수라 함은 서울신학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말한다.
- 제3조 (지도이념)** 담임지도교수는 본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담당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위촉)** 담임지도교수는 매 학기 초 학과장 또는 학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단 특별한 상황이 인정 될 경우 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할 수 있다.
- 제5조 (대상)** 담임지도교수는 학과에서 재학생을 기준으로 매학기 위촉한다. 단, 휴학생은 휴학 전 마지막으로 배정된 지도교수가 지도 한다.
- 제6조 (운영)** ① 담임지도교수는 상담을 통해 각 학생의 신앙, 학사, 면학, 진로, 취업, 기타 일신상의 문제 등을 지도한다.
② 담임지도교수는 매학기 재학생 당 2회 이상, 휴학생 당 1회 이상 상담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10.01.>
③ 담임지도교수는 학생상담 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④ 학생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.
⑤ 담임지도교수는 학생에게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, 긴급 사태가 예상 또는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 (특별지도)** ① 학생처장은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를 별도로 위촉 할 수 있다.
② 특별지도를 요청 받은 교수는 대상 학생의 사유에 따라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내용을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특별지도교수는 사유가 사라지는 즉시 자동 해촉된다.
- 제8조 (회의)** 학생처장은 학과 지도교수 회의 또는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 (지도자료)** 학생처장은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개인정보 관리)** 지도교수는 상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